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박정하 · 한지아 · 김 건
조경태 · 우재준 · 서범수
윤영석 · 이인선 · 박성훈
김태호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올바른 관람 문화 확립을 위해

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호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호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3항).

다.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 ③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의 적발 및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u>

<신 설>

<신 설>

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부정판매 금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의 적발 및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전자상거래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생략) <u><신설></u>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1. ~ 4. (생략)	<u>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